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 59호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1호(2011.03.24.)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3번지 일대 신월4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양 천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양천구 신월동 489-3번지 일대	15,735.2	증) 0.4	15,735.6	-

※ 택지개발예정(좌표)측량성과도 면적반영(2013. 02.22. 대한지적공사)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35.2	증) 0.4	15,735.6	100.0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735.2	증) 0.4	15,735.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2,254.6	증) 90.0	2,344.6	14.9	-
	도로	1,204.6	증) 2.1	1,206.7	7.7	-
	공원	1,050.0	증) 87.9	1,137.9	7.2	소공원
획지	소계	13,480.6	감) 89.6	13,391.0	85.1	-
	획지1	13,480.6	감) 89.6	13,391.0	85.1	분양(임대), 주택부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8	집산 도로	210	신월동 885	신월동 445-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43	신월동 884	신월동 88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6~10 (10)	집산 도로	132 (86)	신월동 885	신월동 490-10	일반 도로	-	-	-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나)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신월동 487-1 일대	1,050.0	증) 87.9	1,137.9	서고 제2011-81호 (2011.3.24)	-

4)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735.2	양천구 신월2동 489-3번지 일원	37	-	-	37	-	-
변경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735.6	양천구 신월2동 489-3번지 일원	37	-	-	37	-	-

나) 건축시설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신월4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5,735.2	획지①	13,480.6	신월동 489-3번지 일대	공동주택	25.0% 이하	229.0% 이하	229.0% 이하	58m이하 (2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294		100.0			
			85㎡ 이하		294		100.0			
			85㎡ 초과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100%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따름							
기타			• 단지 남측에서 북측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확보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변경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735.6	획지 ①	13,391.0	신월동 4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6.2% 이하	209.3% 이하	229.0% 이하	58m이하 (2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299		100.0			
			60㎡ 이하		111		37.1			
			60 ~ 85㎡이하		188		62.9			
			85㎡ 초과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100% • 임대주택(60㎡이하) : 17세대(5.7%)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따름							
기타			• 단지 남측에서 북측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확보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15,735.2㎡	13,480.6㎡	2,254.6㎡	121.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2,254.6㎡ - 121.6㎡ = 2,133.0㎡(구역면적대비 13.56%)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 α) = 190% + (190 × 1.3 × 0.1582) = 229.07% *α = 2,133.0㎡/13,480.6㎡ = 0.1582			
	• 정비계획 용적률 = 229.00%이하 < 229.07%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및 개발가능용적률은 택지안의 모든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임.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시 택지안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적은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에서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할 것.

○ 변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15,735.6㎡	13,391.0㎡	2,344.6㎡	121.7㎡	1,176.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시설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344.6㎡ - 121.7㎡ - 1,176.4㎡ = 1,046.5㎡(구역면적대비 6.65%)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 = 190% × (1 + 1.3 × 0.0781) = 209.30%이하 *α = 1,046.5㎡/13,391.0㎡ = 0.0781495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229.00%이하 • 증가된 용적률의 50% = 229% - 209.30% = 19.70% × 50% = 9.85% • 연면적 환산(소형주택 공급) = 증가된 용적률의 50% × 획지면적 = 9.85% × 13,391㎡ = 1,318.82㎡ •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전용60㎡이하): 17세대 - 공급면적: 79.9㎡ × 17세대 = 1,358.3㎡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17세대로 기준이상 확보 1,358.3㎡ > 기준 1,318.82㎡)				

※ 기존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면적: 6,975.5㎡' 의 순부담률 15%이상 달성을 위해 기반시설(공원)면적(87.9㎡) 추가 확보.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식은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제3절 건축물 밀도계획의 가이드라인(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을 적용함.

※ 구역면적등은 택지개발예정(좌표)측량성과도, 시설편입지 측량성과도 면적만영.(2013. 대한지적공사)

※ 향후 허용용적률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비고
변경	획지1	별도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3동	111세대	59.59㎡	임대주택 17세대 포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달성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계획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 일부 4년 이내	신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152세대 - 계획 : 294세대 - 증가 : 142세대	- 기존 : 152세대 - 계획 : 299세대 - 증가 : 147세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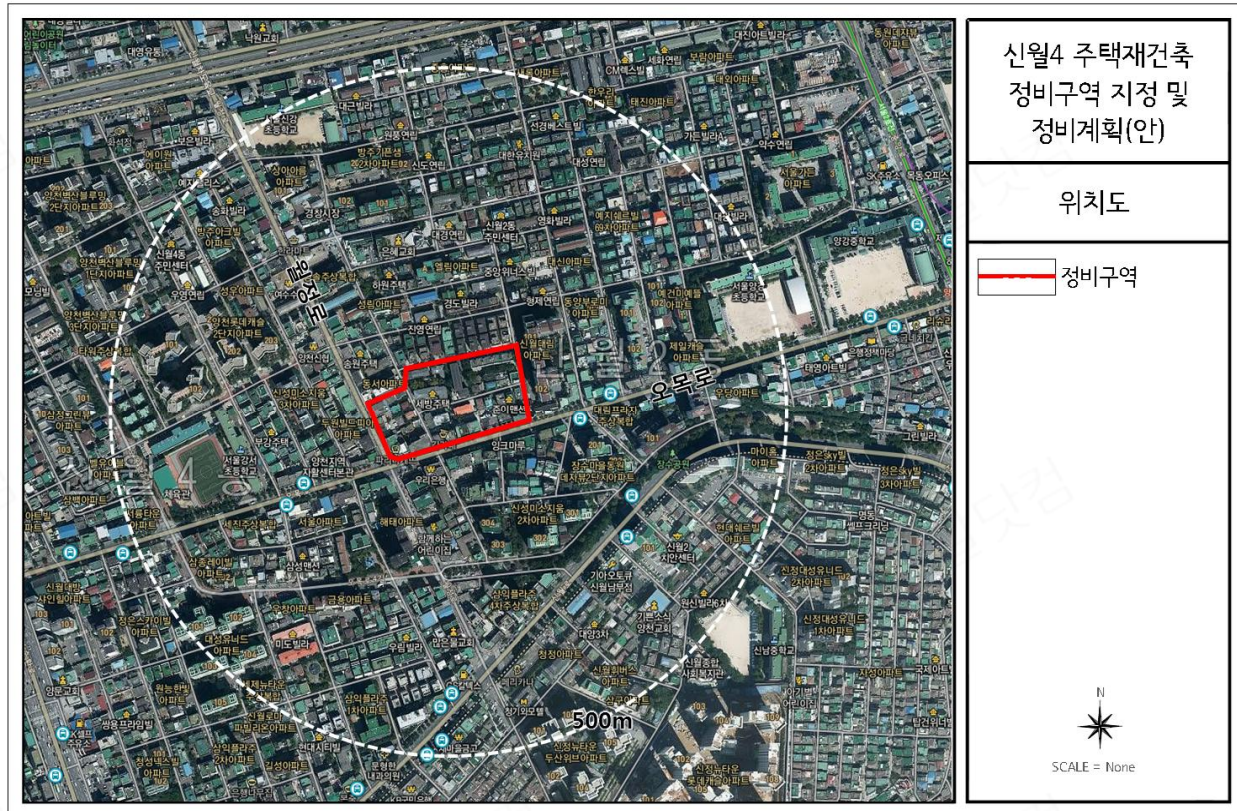
2. 변경사유 : 측량성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 3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 함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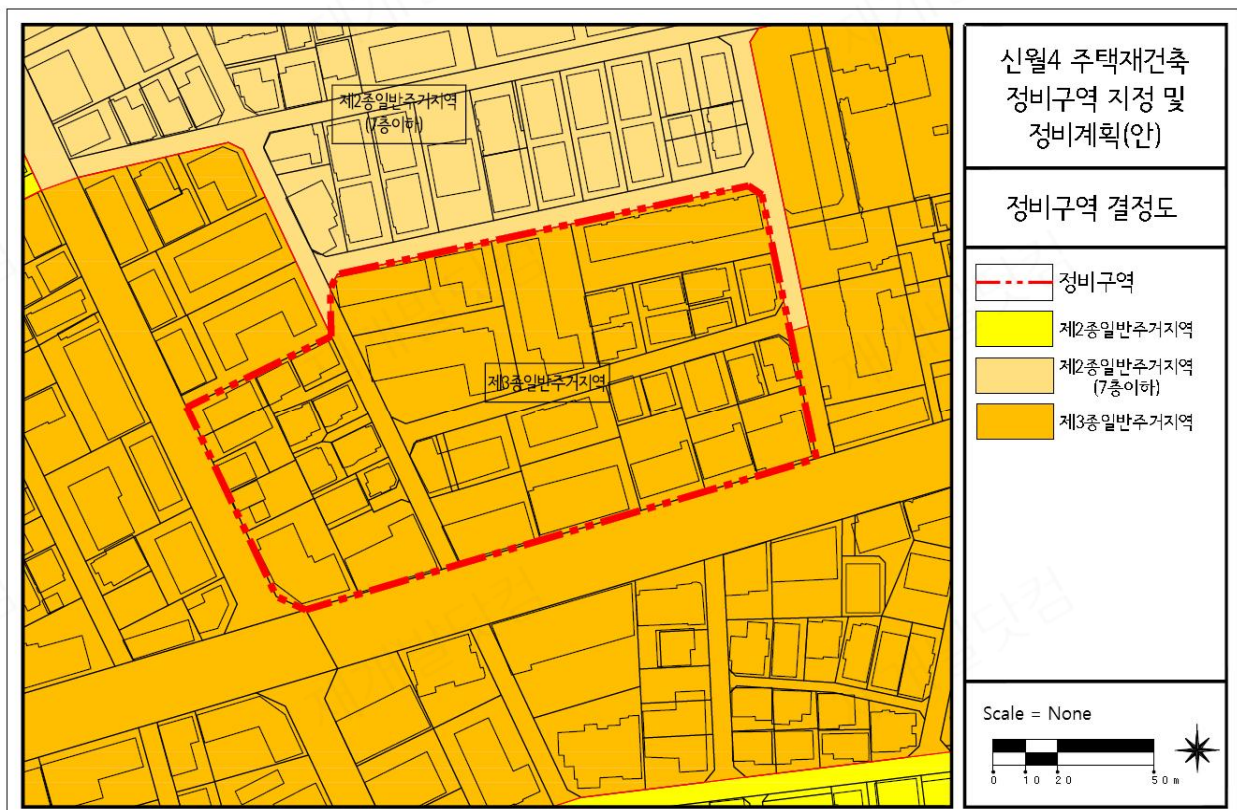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양천구 주택과 (☎02-2620-352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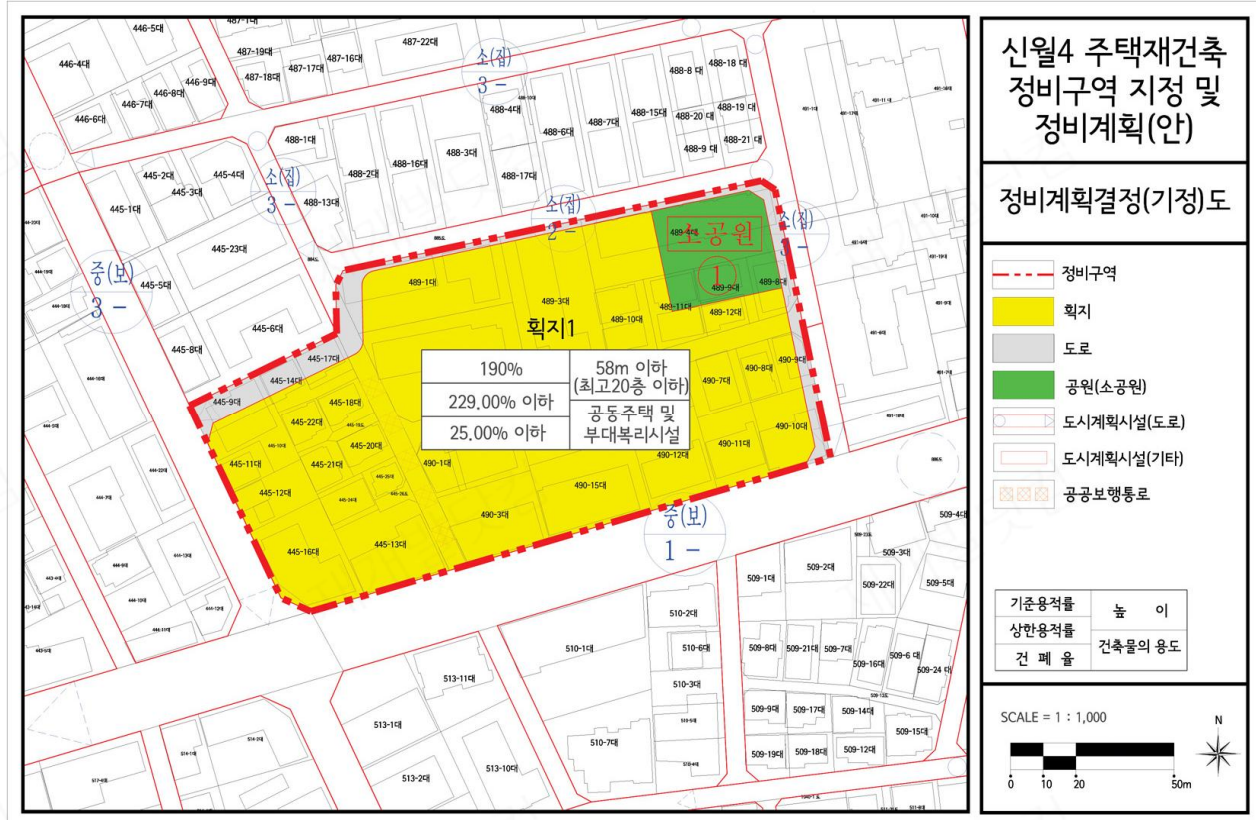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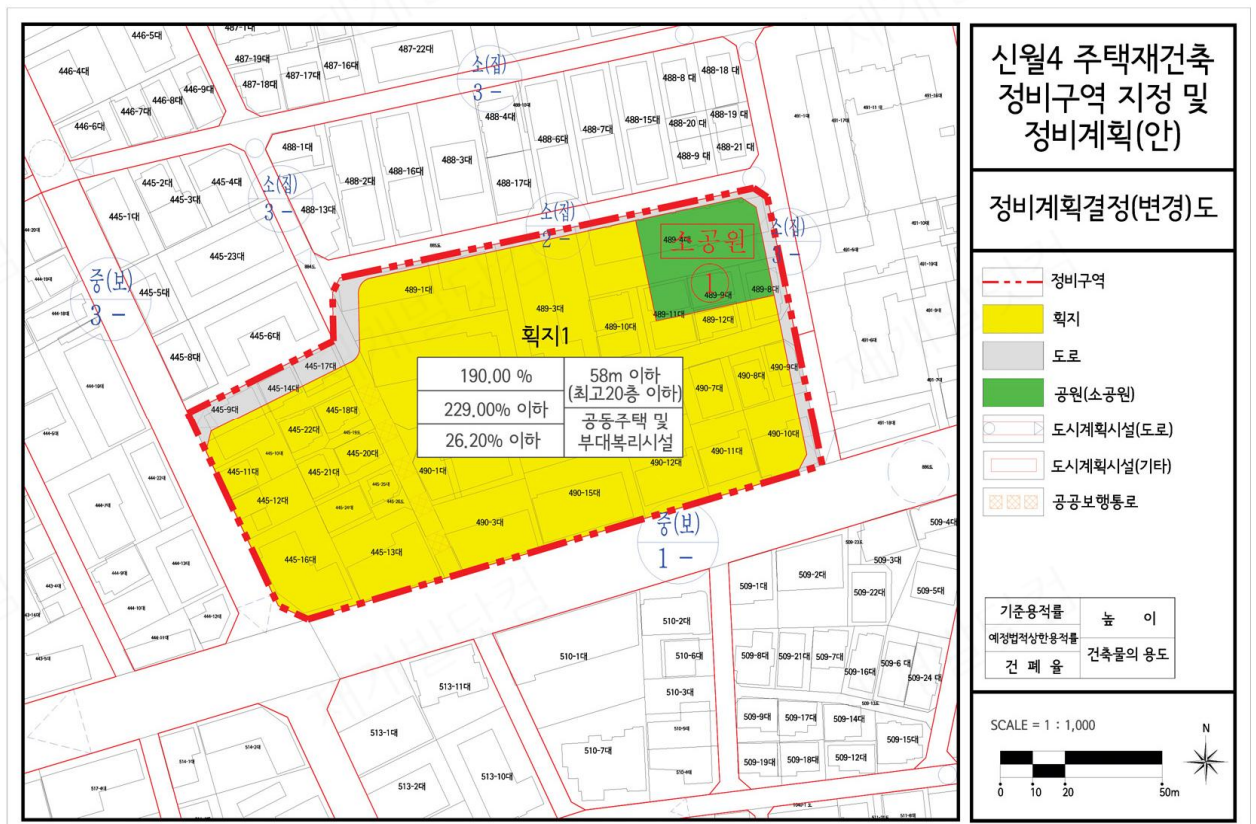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규 칙

●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칙 제 727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김 수 영

1. 개정이유

전산화된 소송사무로 인해 실무에 부적합한 조항 및 서식을 정리하고, 직무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대응 능력 향상시키며, 소송수임료를 서울시 평균수준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 및 서식 삭제

- 별지 제2~8호 서식, 관련규정 제8조 1항 제1호 및 2호)

나. '직무관련 사건' 규정 별도의 장으로 신설

-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히 제시

다. 소송수임료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 비교하여 인상조정

- 소가 3천만원 이상 1,500천원 → 2,000천원
- 소가 5천만원 이상 2,000천원 → 2,500천원
- 소가 1억원 이상 3,000천원 → 4,000천원

라. 소송수임료등지급기준 구분소송에 형사사건 신설

- 개인단독사건 : 1,000,000원
- 다수관련사건 : 2,000,000원
- 구차원대응필요사건 : 3,000,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송수행자등”이란”을 ““소송수행자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 주관과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사건을 말한다.

7.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8. “소송사무 등”이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송사무등”을 “소송사무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정”을 “행정, 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4일전”을 “4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소송기록문서”를 “각 호의 소송문서”로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기록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송수행자등을”을 “소송수행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당해”를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으로, “방침문작성”을 “방침문 작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수행자등을”을 “소송수행자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률고문 등)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송진행중”을 “소송진행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승소된”을 “승소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여부”를 “신청 여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상소여부”를 각각 “상소 여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와”를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액인”을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소송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소후”를 “취소 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부패소사건”을 “전부패소 사건”으로, “회수가능성”을 “회수 가능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송주관과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보 칙”을 “소송심의회”로 한다.

제30조를 제37조로 하고, 제28조를 제30조로 하며, 제31조를 제38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1조로 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제2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8조의2)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등) ①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과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사건과 직무관련 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소송물가액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

②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주관과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과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종전의 제28조) 앞에 제5장(제30조, 제31조)을 신설한다.

제5장 소송비용

제30조(종전의 제28조)의 제목 “(소송비용)”을 “(수임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1과”를 “별표와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종전의 제2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송심의회”를 “심의회”로 하며, “1천만원의 범위내”를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8조) 제5항 중 “소송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5천만원의 범위내”를 “5천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상은 소송주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포상금”을 “제1항의 포상금”으로 하고,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9조) 제3항 중 “한한다)과”를 “한한다)의”로 하고,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직무관련 사건

제32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 사건 주관과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직무관련사건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별표와 같다.

제36조(비용 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직무관련 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과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0조) 앞에 제7장(제37조 및 제38조)을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종전의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소송수임료등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소송사건관리대장(행정소송))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소송사건관리대장(민사소송))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불변기간대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소송사건위임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민사(행정)소송판결문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행정소송기록카드)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민사소송기록카드)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이면), 별지 제16호서식(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임의변제청구위임장)을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확약서)을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변호인 선임신고서)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수임료는 최종 심급 종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소송수임료등지급기준

구분 소송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공 통 경 비
행정 · 민사 소송 ·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원 400,000원	1. 승소비율이 50%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 또는 인락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중요신청사건 : 100만원	1. 인지대:실비 2. 송달료:실비 3. 검정·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여비 5. 기타 : 실비
	2.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3천만원미만 나.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다.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라. 1억원이상	1,000,000원 2,000,000원 2,500,000원 4,000,000원		
형사 사건	3. 환송심 원심의 1/2 (단, 동일번호사 선임시)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 이 필요한 사건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1. 피고소·피고발 등으로 인한 수사사건에서 80% 이상 불기소된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형사재판에서 80% 이상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기 지급한 착수금의 반액	1.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여비 2. 기타 : 실비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별지 제10호서식〉

(이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의거 검찰청장의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폐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배상금입의변제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고)	주소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고)	주소						
위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대리인	주소						
청구금액 (확정금) 원정							
원고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 2.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3.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임의변제청구위임장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에게 지방법원 가(합) 호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대법원 다 호

○○○○○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중

〈별지 제18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원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률 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확정시 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추후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확정시 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비용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이러한 사전조치와 본안소송 제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중

〈별지 제19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피의자)

사건번호:

사 건 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무법인 ○○ (주소 및 전화번호) 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피고인 ○○○ (서명 또는 인)

귀중

〈별지19호서식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인)

주 소:

관 계:

2. 성 명: (인)

주 소:

관 계:

3. 성 명: (인)

주 소:

관 계:

4. 성 명: (인)

주 소:

관 계:

5. 성 명: (인)

주 소:

관 계:

◎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칙 제 728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김 수 영

1. 개정이유

2016. 3. 7.일자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조례 제1조(목적)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영에”로 변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3조”를 “제36조”로,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을 “비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성관련”을 “양성평등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심의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8조 따른 위원회의”를 “제42조 따른 심의회의”로, “3월과 11월에”를 “2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를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로, “11월”을 “하반기”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마감일 로부터 30일	
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의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		기금 보조액	자체 부담액	후 원 금	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		별첨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임원 명단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훈 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훈령 제 170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김 수 영

1. 제정이유

- 협업하는 직원과 부서를 우대하여 협업 활성화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대상(제2조 ~ 제3조)
 - 협업, 협업포인트, 특별 협업포인트, 협업포인트 시스템 정의
 - 협업포인트(이하 '포인트') 적용 대상 규정
- 협업포인트 운영자(제4조)
 - 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예산과장이며 시스템과 포인트를 운영·관리
 - 관련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포인트 활성화 방안 마련
- 협업포인트 배정, 사용, 메시지 공개(제5조~제7조, 제10조)
 - 매월 1일 직원에게 200포인트 배정
 - 같은 사람에게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고, 같은 부서(동)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음
 - 보내는 감사메시지는 공개 (협업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공개 전환 가능)
- 협업포인트의 관리(제8조)
 - 배정된 포인트와 받은 포인트를 구분하여 관리
 - 부서(동) 포인트는 현원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하고 매일 확정 관리 (인사로 소속 직원 변동되어도 포인트 실적 유지)
- 특별 협업포인트(제9조)
 -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경우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
 - 연간 2,500포인트 범위에서 운영, 1명에게 1회 200포인트 이내 지급
- 포상금 지급 및 우대 조치(제11조 ~ 제12조)
 - 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음
 - 포인트 성과를 부서평거나 근무성적평적 등에 반영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기본 협업포인트를 말하며 특별 협업포인트와 구별된다.
3. “특별 협업포인트”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구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4. “협업포인트 시스템”이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이음’의 시스템을(이하 “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구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구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 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성과업무, 인사업무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에게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명에게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구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고, 같은 부서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의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한다.

③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따라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특별 협업포인트) ① 특별 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 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500포인트 범위에서 운영하고, 1명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200포인트 범위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라 부서장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하거나 부서종합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행정자치부 인사제도과에서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